

「평창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5. 04 10(목) 평창군수(자치행정과장)

나. 회부일자 : 2015. 04. 14(화)

다. 상정일자 : 2015. 04. 20(월) 제209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주민 여론을 결집하고 지역 공동의 이익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평창군번영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홍금숙)

- 본 조례안은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주민 여론을 결집하고 지역 공동의 이익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평창군번영회의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 포럼 등 사업비와 올림픽 홍보활동비, 조직역량 강화 교육사업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번영회 및 회원에 대한 표창 등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기준이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금번 조례의 제정이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기타 사회단체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속적으로 제정 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됨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번영회지원조례 제정 자치단체 : 전남 무안군(2015. 1. 5 제정)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평창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결집하고 지역 공동의 이익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평창군번영회 (이하 "군번영회"라 한다)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군번영회"란 (사)평창군번영회와 그 회원단체(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번영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발전을 위한 군번영회의 포럼, 토론회 등 사업비
2. 군번영회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활동 사업비
3. 군번영회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비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표창 등) 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하여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군번영회 및 그 회원에게 「평창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